

영등포구의회  
제125회 정기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檢 討 報 告 書

2006. 12. 6



行 政 委 員 會  
( 專 門 委 員 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  
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**1**

## 제안이유

우리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 및 중앙부처 권  
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 전담인력,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  
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한시  
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**2**

## 주요내용

가.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정원 연장

- 정 원 : 4명(일반5급 1, 8급 1, 9급 1, 기능10급 1)
- 개정내용 : 기간연장 (2006. 12. 31 → 2008. 12. 31)

나.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 
연장

- 정 원 : 1명(일반7급 1)
- 개정내용 : 기간연장 (2006. 12. 31 → 2008. 12. 31)

다. 복식부기보급 관련 전담인력 정원 연장

- 정 원 : 2명(일반7급 1, 8급 1)
- 개정내용 : 기간연장 (2006. 12. 31 → 2008. 12. 31)

라.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전담인력 정원

- 정 원 : 2명(일반7급 1, 8급 1)
- 개정내용 : 기간연장( 2006. 12. 31 → 2007. 12. 31)

**3**

**검토의견**

○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에 근거하고

○ 2004년 5월 25일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 중  
“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시범사업” 관련 전담인력 4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31일 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2006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고

2005년 3월 21일 조례 제582호 부칙 제2조 중  
“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” 관련 전담인력 1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2006년 10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으며

2005년 12월 22일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 중  
“복식부기 보급” 관련 전담인력 2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

연장을 2006년 10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.  
2005년 12월 22일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 중  
“사업별 예산제도도입” 관련 전담인력 2명에 대하여는  
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우리구의회에서 승인되었  
으나 2005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보강지침에  
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승인되어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  
영 등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며

결론적으로 본 조례는 한시정원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연  
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별 정원의 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 
있었고 관계 법규에 근거하였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2006. 12. 6

보고자 : 김 완 섭

붙임 : 관련법조문

# 관련법조문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

제21조 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1995.5.16, 1998.8.31, 2000.12.30>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4.12.18>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04.12.18>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신설 1997.2.4>

⑤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1997.2.4, 2005.10.20>